

인권정보자료실
CPh1.122

청문회 자료집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일시| 2005년 10월 19일(수)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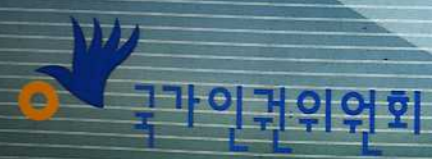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2005·10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전화 02)2125-9700 팩스 02)2125-9666
www.humanrights.go.kr

인권정보자료실
CPh1.122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일 시| 2005년 10월 19일(수) 14:00~17:00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 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 청문회 개요	1
□ 모두 진술 요지	7
○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진술자료	9
전원규 (병무청 선병국장)	
○ 양심적 병역거부 청문회 진술서 요지	18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 입장	33
최 운 (국방부 인사국장)	
□ 청문 및 진술	41
○ 진술인 : 전원규 (병무청 선병국장)	43
○ 진술인 :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45
○ 진술인 : 최 운 (국방부 인사국장)	47
○ 진술인 :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49
○ 진술인 :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51
○ 진술인 : 임태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활동가)	53
○ 진술인 :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55
○ 진술인 : 이재승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57
○ 진술인 :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59
별첨 1.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률안	61
○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	63
○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99
별첨 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례	145
○ 헌법재판소 결정	147
○ 대법원 판결	205

청문회 개요

- 주제 3
- 진술 및 청문 3
- 진행순서 4
- 진행순서 5

청문회 개요

1. 주 제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2. 진술 및 청문

○ 모두진술

- 진술 1 :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및 현황
전원규 (병무청 선병국장)
- 진술 2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연대회의 입장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진술 3 :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 입장
최 운 (국방부 인사국장)

○ 청 문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

- 청문주재자 : 위원장 (조영황)
- 청문위원 : 정책위원회 위원 (최영애, 정인섭, 최금숙)

○ 진술인 및 참고인

- 전원규 (병무청 선병국장)
-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최 운 (국방부 인사국장)
-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 임태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활동가)
-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 이재승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3.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14:05(5분)	개회 및 인사	
14:05~14:10(5분)	참석자 소개	
14:10~14:25(15분)	모 두 진 술	진술1 :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및 현황
14:25~14:40(15분)		진술2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연대회의 입장
14:40~14:55(15분)		진술3 : 산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 입장
14:55~16:55(120분)	청 문	쟁점별 질의와 답변
16:55	정리 및 폐회	

4. 진행방법

○ 청문회 진행 방식

- 원칙적으로 위원회 의사진행의 예에 따름

○ 진술 및 청문

- 모두 진술 : 병무청, 연대회의, 국방부의 모두 진술 (15분 이내)

※ 진술인 발표 중 질의·답변이나 진술인 상호간 토론은 지양함. 단 방청인의 서면질의를 허용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은 질의 및 답변시간에 하도록 함

- 진술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위원의 질의 및 응답

※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함

- 기타 보충 질의응답 및 진술

○ 질의 및 답변

- 정해진 질의 청문위원 순서에 따라 1문 1답 순으로 진행

- 필요한 경우 시간 제한
- 방청인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되 서면질의가 허용될 수 있음

모두 진술 요지

-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진술자료 9
- 양심적 병역거부 청문회 진술서 요지 18
-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 입장 33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진술자료

전원규 (병무청 선병국장)

1 인사 말씀

- 병무청 선병국장 전원규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특히 지대한 관심분야인 병역거부문제를 주제로 하여 오늘 인권위원회에서 조영황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계 훌륭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 발표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실태 및 일반적 현황 위주로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사법부의 병역거부에 관한 판결요지, 외국의 병역거부 인정사례 등의 순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 다소 표현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병역거부자 현황

- 먼저 병역거부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교적 신념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2001년 이전까지는 군에 입영한 후에 군사훈련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형태이었으나, 2001년 중반 이후부터는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입영과정에서 입영을 거부하는 것으로 병역거부의 양상이 변화하였습니다.
- 2000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약 5년 동안에 발생한 병역거부자는 총 2,911명으로써 연평균 600여명 정도가 발생하였는데, 총발생인원 2,900여명 중에서 종교사유 이외의 전쟁반대나 평화주의 등 개인 신념에 의한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지금까지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간 병역거부자 발생인원

구분	계	'05	'04	'03	'02	'01	'00
계	2911	390	755	561	825	379	1
여호와 증인	2893	387	748	557	822	378	1
불교	2			1		1	
기타	16	3	7	3	3		

- 기타 : 전쟁반대, 평화주의등 개인신념에 의한 거부자

- 연도별 발생 추세를 보면 '94년도에는 233명이던 것이 2000년도 657명, 2002년도 825명, 2004년도 756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군입대후 집총거부 및 입영거부자 현황

구분	'05.8월	'04	'03	'02	'01	'00	'99	'98	'97	'96	'95	'94
계	390	756	564	825	646	657	544	498	436	342	471	233
집총거부	-	1	3	-	267	656	544	498	436	342	471	233
입영거부	390	755	561	825	379	1	-	-	-	-	-	-

- 특히 2002년도에 갑자기 병역거부자가 825명으로 늘어난 까닭은 2001년 중반이후부터 민간법정에서 입영거부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2001년 이전 집총거부자에게는 군형법 제44조에 의거 항명죄로 징역 2~3년형을 선고하였으나, 2001년 중반이후 징·소집 입영거부자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입영기피죄를 적용하여 대부분 수형사유 제2국민역 처분기준인 징역 1년6월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리현황
(2000~2005. 8월)

계	징역				집행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기소유예	재판계류중
	소계	3년 미만~2년 이상	1년6월 이상	1년 이상					
2,911	2,393	19	2,363	11	14	3	53	4	444

3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내용(요지)

- 다음은 작년 7.15일과 8.26일에 있었던 병역거부자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핵심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 또한 양심의 자유는 법적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도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한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

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국제법적인 주요 근거

- 일반적으로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도입의 국제법적 근거로 인용되는 것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948년에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1966년 유엔에서 채택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그리고 1988년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제77호가 있습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권위원회 결의나 국제 규약은 많은 나라가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별 병역제도 결정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법적 구속이나 강제력보다는 각국이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게 합당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 또는 권고하는 성격입니다.

5 외국의 병역거부 인정 사례

- 끝으로 외국의 병역거부 인정사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병역거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징병제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세계국가중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약 48개국 정도이고, 반면에 병역거부를 인정하여 군내 비무장 복무를 도입하거나 또는 민간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약 31개 국가로서, 그 중 약 87% 정도인 23개국이 유럽 국가들임
- 위와 같은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병역제도란 그 나라의 지정학적 안보상황이나 전통, 국민정서 등의 복합적이고 고유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라에 따라 다르고 단순 일률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국가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역사적 배경이나 탈냉전이후 안보 위협감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독일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과정을 보면 세계대전을 통해 주변국가를 침범한 전범 국가로서의 반성 측면이 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병역거부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독일 병역거부자 발생 추이

(단위 : 명)

연 도	1945년	1955년	1980년	2004년하반기
병역거부자 발생 인원	2,784	22,980	106,992	108,500

- 또한 대만의 경우, 국군 정예화에 따른 병역 잉여자원의 국가적 활용차원에서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는데, 특징은 전 병역의무자가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추천에 의거 대체복무자를 최종 선발하며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추천없이 심사를 거쳐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 대만이 우리 나라와 다른 또 한가지 특징은, 병역기피 풍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불교, 도교 신자로서 종교사유로 인한 연간 병역거부 인원수도 50여명에 불과합니다.

※ 국민중에서 여호와 신도수 : 대만 약 5천여명 ↔ 한국 9만여명

병역거부자수(대만) : 연간 50여명선

6 종합

- 이상으로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간단히 실태 및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 참고로 현재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도입 병역법개정안이 국회 논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청문회 진술서 요지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1. 그동안의 논의 과정 개관

2000년 들어 우리 사회에 돌연히 던져진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은 그동안 그 어느 인권 주제보다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무기를 드는 대신에 다른 형태의 적절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해 달라고 호소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두드렸다. 이후 지금까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참여한 국제 심포지움을 포함하여 수많은 학술 토론회가 열리고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이 발표되어 대체복무 제도 입법을 촉구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은 가장 오랫동안 우리가 무관심해 왔던 사안인 동시에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대한 논의에서 오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초기 결실은 사법부에서 일차적으로 나왔다. 병역법 위반죄로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종종 2년 또는 3년의 법정 최고형 또는 변칙적인 법 적용으로 그 이상의 형을 부과하던 법원이 2001년부터 병역 면

제에 해당하는 형이면서 법정 최저형인 1년 6개월을 선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02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병역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2초기54 결정).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법원이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04년 5월 역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병역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를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단3940 판결 등). 이 판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대법원은 그 무렵 대법원에 상고된 두 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대하여 서둘러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결국 그해 7월 대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4도2065 판결 등). 뒤이어 8월 헌법재판소도 앞서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02헌가1 결정).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자 그동안 사건을 미루어 두고 있었던 사법부는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기계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해 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두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엔에 제소(Communication)하여 현재 계류중이다.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재판이 끝나는 대로 순차로 유엔에 제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년 10월 15일 현재 전국의 교도소나 구치소 등 수형시설에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모두 1186명(이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닌 이는 11명)이다. 이들이 모두 유엔에 제소하는 경우 이는 사상 유례 없는 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한편 열린 우리당의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이들 의안을 바탕으로 금년 3월 공청회를 연 바가 있다. 이 의안들은 내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다.

2.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내포되어 있는 긍정적 의미 -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국회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데 있다.

우선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 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겁게 처벌해 왔다(대법원 92도1534 판결 등). 대체복무 제도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채 간결하게 한문장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장을 배척한 이 예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무지한 과거의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할 만하다.

어떻든 이러한 대법원의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판결에서 앞서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처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사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대하여 호의적이더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하지 않아도 처벌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 입법이 미처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아무런 대안없이 처벌하는 병역법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보고 소수 의견(대법관 12명 중 6명의 견해)의 형태로 대체복무 입법을 촉구하는 판단을 판결에 담게 한 것이다. 요컨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숨은 뜻은 국회에 대하여 대체복무 입법을 촉구하는 엄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대법원의 대체복무 입법 촉구 의견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체복무 입법은 필요하다”고 답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대법원 판결의 긍정적 의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더욱 확인된다. 대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 사안에서 위헌 결정을 선고하는데 큰 부담을 가졌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아직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역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전부에 대하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할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이는 선택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이유에서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방안이 있는지”를 입법자가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대체복무 입법을 촉구하였다.

3. 여론의 변화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여론이 보여 주었던 대부분의 적대적인 생각은 5년여가 지난 지금 큰 변화를 겪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일별해 보면, 설문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일률적이 아니긴 하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하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donga.com이 2001년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 33,169명 중 63.7%가 대체복무를 지지했다.

또 병무청이 ‘방문 민원인’의 경우는 13개 지방청, ‘징병검사 수감자’의 경우는 8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2003년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원인’의 경우는 47.0%, ‘징병검사 수감자’의 경우는 51.6%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평균하여 49.0%가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한 이 비율은 전년도 하반기와 비교하여 4.6% 증가한 것이라고 병무청은 조사 결과에서 부기하고 있다. 군입대와 관련하여 병무청을 방문한 ‘민원인’들과 입대를 목전에 둔 ‘징병검사 수감자’들이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부가 대체복무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중요한 징표가 된다고 여겨진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년 3월 국민인권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처럼 대체복무의 필요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율은 ‘일반인’의 경우 36.7%였다. 반면 ‘전문가’는 3.3%,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는 2.0%였다. 그리고 “군복무 대신 사회

봉사 기관 등에서 대체복무 허용”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일반인’ 36.7%, ‘전문가’ 63.3%,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84.2%였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명시적으로 63.3%가 대체복무 허용을 인정하는 ‘전문가’ 집단의 생각이다(‘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체복무 도입을 옹호하는 것은 그 활동 성격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논외로 한다).

우리 나라는 광복이후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다. 거기에 군사정권의 독재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사회 전반에 군사문화가 남아 있고,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군복무 경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거칠게 말하면 특별한 전문적 지적 배경이 없고, 일상사에서 국가·사회적 의제와 관련하여 내면의 갈등을 구태여 겪을 필요없이 생활하는 ‘일반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 집단은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와는 달리 진보적인 견해와 보수적인 견해가 서로 섞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들 “전문가” 집단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수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4. 국가안보와의 관계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군 복무 기피 경향이 증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가안보가 단순히 국방력 그것도 무기를 든 군인의 수가 얼마나 많느냐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거나 지난 시대의 이야기일 뿐이다. 국가안보는 굳이 말하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국력의 합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의 국방력 외에 국민소득, 산업의 규모와 성격, 경제적 불평등 정도, 사회·문화적 환경, 정보화 등이 포함되고 인권 보장도 필수적인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인권이 공공연히 위협받는 나라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불안감을 느끼는 나라의 국력이 진정한 의미에서 높게 평가될 수는 없다.

국력이 강하다 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선진국들의 인권 보장 수준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의 여러 대륙 중에서 경제적으로 앞서고 안정적인 국가안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 각 국에서 대체 복무제는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안보라는 말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보고 대신에 “인간안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인권 보장은 국가안보의 대립어가 아니라 전제 또는 적어도 동반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10조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월 13일 국방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종래의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를 기술 위주의 질적 첨단구조”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병력은 점차 줄어 현재의 68만명에서 2020년이 되면 50만명이 된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2008년까지 병사를 중심으로 6만여명의 감축을 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 군 병력을 은밀하게 9,000명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군병력 감축 숫자와 앞으로의 대규모 병력 감축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여 대체복무에 편입해도 그리고 한해 평균 600명 남짓 되어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향후 무기를 들지 않는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도 군 병력 유지와 전력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이 명백하다. 정부는 지난해 가장 성실하고 모범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 자원으로 기여하게 하는 기회를 놓쳤다. 이들을 대체복무에 투입하였을 경우 정부는 그 숫자만큼 병력을 감축하지 않으면서 사회 복지 등 필요한 부문에 활용하는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이상을 요약할 때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다거나 국방력이 약화된다고 하는 주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주장을 답습하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5. 대만의 예

그간 많은 토론회나 학술 연구 등에서 대체복무제를 두고 있는 국가는 충분히 소개된 바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반복은 약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 사회와 가장 유사하면서도 최근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대만의 예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2001년에 이어 2004년에 대만을 다녀왔다. 대만은 2000년 7월부터 “국가안전을 우선적인 기초 과제”로 정하면서 ①병력인원의 보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병력인원의 자질을 낮추지 않는다 ③병력의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사회치안 분야와 사회 서비스 분야 등에 대체복무를 실시해 왔다. 2001년 방문의 경우는 그 전해에 도입된 대체복무제의 입법 배경과 시행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2004년에 다시 방문하게 된 이유는 그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우려하는 바의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는가 2)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는 없었는가 3) 대체복무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었는가 등을 살펴 보기 위한 것이었다.

방문 결과는 한마디로 인상적인 것이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하는 종교적 사유를 이유로 한 대체복무 신청자가 특별히 증가했다는 지표를 찾을 수가 없었다. 또 대만 당국의 조사에 의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하여 군 복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대만 당국은 대체복무 도입이 군 전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고 현역보다 11개월 복무기간이 길도록 한 2년 9개월의 대체복무 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2003년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의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은 사실상 현역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4개월 장기). 더욱이 도입 초기에는 종교적 사유만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 신청자에 한하여 군사훈련을 면제해 주던 것을 이제는 개인의 평화주의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도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놓았다(자원봉사경력 1년 이상, 봉사시간 합계 150시간 이상이면 된다). 나아가 대만은 현재 종교적 또는 개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법정된 여러 가지 사유(전문기술 자격이 있다던가 가정 사유가 있다던가 등)를 이유로 한 대체복무자 모두에게 군사 훈련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만에서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논의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구별의 의미가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대만의 예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리가 대만의 국가안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별론으로 하고, 대만 시민들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국가안전 면에서 우리보다 더 낫다고 느끼고 있을까. 대만의 군 복무 여건 역시 특별히 우리보다 낫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체복무 시행 후 대만의 젊은이들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체복무를 신청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러리라고 볼 이유도 없다. 단기간의 시행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7개월이나 줄인 대만의 성공적인 대체복무 시행의 예는 우리에게도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국가안보의 면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옹호 면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중요한 개연성을 제공해 준다.

6.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1호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인권’은 우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 외에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국제인권규약은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각 체약국은 규약상의 인권 보장 의무 이행 여부 및 그 침해 여부에 대하여 유엔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국가권력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처럼 국가가 지는 인권보장 의무를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그 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데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는 이와같은 국가인권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87년 이래 일관하여 결의로써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각국이 인정하고 다양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도록 촉구해 왔다. 이 결의는 2000년 이후에도 2년마다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채택되어 왔는데, 한국정부도 2000년 결의 이후 찬성국으로 참여해 왔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1993년 “일반논평”(General Comment)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공표하였다. 따라서 1990년 위 인권규약에 가입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1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7. 맺는 말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치열하게 전개되던 1916년에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월남

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자가 확대되던 1965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독은 베를린장벽이 완성됨으로써 동독과의 사이에 동서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61년에 양심적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다.

앞에서 인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일반인’의 65.6%, ‘전문가’의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일반인’의 69.9%와 ‘전문가’의 80.0%,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95.1%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부도 입법부도 아니다. 인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조사 연구하고 국가 기관에 의견을 권고할 뿐이다. 그러나 인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국가 기관의 결정을 선도하고 방향지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은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앞서의 국민의식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강화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여호와의 증인’ 수감자들이 반세기 이상 당해 온 부당한 종교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하여 2002년 10월 시정을 명한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돋보이게 한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후 당국이 우려한 수감자 수용상의 문제점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나처럼 교도관들은 ‘여호와의 증인’ 수감자들이 교도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보조하는데 대해 안도하고, 이들의 석방을 아쉬워 할 뿐이다. 대만을 방문한 연대회의 관계자들도 대만의 대체복무 운영당국자들이 대체복무중인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의 성실성을 칭찬하며 이들이 대체복무를 마치고 귀향하는데 대하여 몹시 아쉬워하는 것을 확인하고 공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1991년 투옥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전형적인 ‘양심수’로 선언하였다. 한국의 감옥에 투옥중인 1186명의 양심수! 이들에 대한 시급한 구제책 마련없이 한국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60여년 전인 1943년 6월 14일 ‘국기의 날(Flag Day)’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교에서 국기경례를 거부함으로써 퇴학당한 ‘여호와의 증인’ 바네트(Barnette) 사건에서 그 퇴학처분을 정당화하는 서부 버지니아 국기경례법을 무효화시키는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이 청문회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하루 빨리 대체복무 입법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 입장

최 운 (국방부 인사국장)

I. 서 론

먼저 소위 말하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즉 ‘종교적병역거부자’에 대해 종교적병역거부자가 99%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교적병역거부자’로 표현함을 양해바랍니다. 종교적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 대신 별도의 사회봉사 임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수용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회의 대정부 질의답변과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걸쳐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듯이 「현 단계에서는 대체복무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와 평화체제 정착 등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병역제도 개선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하여 장기과제로서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II. 경 위

- '00.8 대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계기 관심 촉발

- '01.4 국회(국방위/법사위) 대체복무관련 국방부입장 요구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인정 불가”입장 국회 회신
- '04.7 종교 사유 병역거부 유죄(대법원) 확정판결
- '04.8 병역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04.9/11 임종인/노회찬의원,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입법안 발의
 - 병역거부권 인정과 사회봉사업무로 병역대체복무
 - * 복무기간 : 육군병의 1.5배(3년), 단체숙박 생활
- '05.4~9 사회여론조사를 겸한 연구 용역(KIDA)

Ⅲ. 국회입법안 요지

구 분	임종인의원안	노회찬의원안
대체복무자 용어	○사회복지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 분야	○사회복지시설 ○본인선택 불가능	○사회복지 또는 공익업무 ○본인선택 가능
판정위원회 설치	○중앙위원회-병무청 ○지방위원회-지방병무청	○중앙위원회-국방부 ○지방위원회-지방병무청
신청 시기	○역종 처분후 60일내	○역종 처분후 90일내
판정 기간	○신청 120일내	○신청 90일내
복무 배치	○보건복지부-병무청간 협의 복무분야/시설 지정	○중앙위·지방위원회가 복무분야/시설 지정

구 분	임종인의원안	노회찬의원안
복무 기간	○육군병의 1.5배 ○만료후 제2국민역 편입	○ 좌 동
복무 관리	○복무시간 - 보건복지부 ○복무시간외 - 병무청	○복무시간 - 복무시설의장 ○복무시간외 - 병무청
합숙 형태	○별도시설에서 단체숙박	○ 좌 동
취소자	○현역 입영 또는 공익요원	○ 좌 동
별 칙	○허위/대리신청자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허위증명서 발급 종교인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 좌 동

Ⅳ. 국방부 입장

세부적인 국방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병제도의 기본틀 훼손 우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비록 소수(연간 600명)라 하더라도 병역기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된다면 ‘국방의 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하게

약화되어 징병제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며 그간 형벌을 통하여 병역기피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였던 예방효과가 없어질 것입니다.

* '05.6월 국적법 개정에 따른 병역회피 목적 추정외 국적포기 신청자가 개정 추진전 평소 일평균 2~3명에서 → 200여명으로 폭증

2. 종교간 종파간 새로운 갈등 우려

특정종교인(여호와증인)이 전체 병역거부자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만의 단체생활을 통한 종교 활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신앙 전도에 치중할 우려가 있으며, 의도적으로 다른 종교·종파간 새로운 갈등 요인을 제공하게 되어 타종교에서도 교리를 내세워 병역거부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3. 병역자원 수급의 차질

병역자원 수급상황의 변화로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기피 목적의 종교 개종 등 특정 종교의 신도수 증가와 일반인들의 막연한 신념에 의한 병역회피 가능성 증폭 우려 등 병역자원의 일시적 수급 차질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사회 각계에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 신설이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총 18개분야 28,000여명에 달하

는 대체복무 수요를 제시하고 있어 어느 한 분야라도 이를 수용할 경우 전분야로 파급되어 자원수급문제와 병역형평성 문제가 국가적 부담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4. 대체복무의 근본 취지에 부적합

현 제도하의 기존 대체복무자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예비군 훈련 등 군사적 목적의 임무를 다하고 있고 유사시 동원되어 전장에 즉각 투입되는 예비병력이나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입영거부 뿐 아니라 유사시에도 국방의 임무에 복무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5.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비교는 무리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탈냉전 이후 집단안보체제가 확립되어 직접적이고 심대한 안보위협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의무병제에서 지원병제로 병역제도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만은 1997년 부터 시작한 10개년 목표의 감군정책(60만→30만)으로 인한 징집자원 초과 등 국방여건 변화로 2000년도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남북간 민간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어 다소 안보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군사적 대치는 지속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6.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

현역병들을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은 “우리는 양심이나 신념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상대적 박탈감을 표출하는 등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인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국론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국방연구원에서 '05.4월부터 9월까지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시행한 사회여론 용역연구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2%가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은 반대의견이 80%를 육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병역거부자 문제가 이슈화 할 때마다 수용거부를 촉구하는 민원과 사이버 테러가 빈발하며 특히 군 장병들의 반발이 특히 심각한 상태임.

V. 결론

특정종교 개종을 통한 병역기피 확산과 종교 종파간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개인 신념에 따라 군대에 안가도 된다는 의식의 확산 등 징병제 근간 훼손과 현역병의 사기저하가 매우 우려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대체복무 수용이 곤란하나, 향후 남북관계가 평화정착 체제로 갈 시기를 대비하여 장기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붙임 : 쟁점사항 비교

※ 쟁점사항 비교

구 분	찬 성 론	반 대 론
유엔인권규약 준수/효력문제	○한국정부가 유엔의 인권위 결의나 권고를 준수할 책임 있음	○유엔인권위 결의사항 중 고문 방지 결의 등 이미 국제 관습법상 강행법규로 인식된 규범에 대하여는 그 위반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결의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력 유무는 논란 여지가 많음
안보환경의 특수성 문제	○대만의 경우 병력감축과 더불어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군의 선진화와 인권신장의 효과를 거둠	○남북간 민간분야 교류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군사적 대치 형국이나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음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문제	○병역의무는 직접적인 집총을 한 병력 형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의무 이행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현재 다양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므로 제도운영과정을 통하여 이행의 형평성 확보 가능	○현역복무의 부담이 크고 병역에 대한 사회적 평등 요구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군사교육까지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은 병역의 무라고 볼 수 없음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인권 신장, 소수자 보호측면과 복지기반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로 사회통합에 기여	○특정 종교신자 위주의 병역 거부자들이므로 특정 종파 전도활동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종교갈등 우려는 물론 일반여론도 부정적이므로 사회통합을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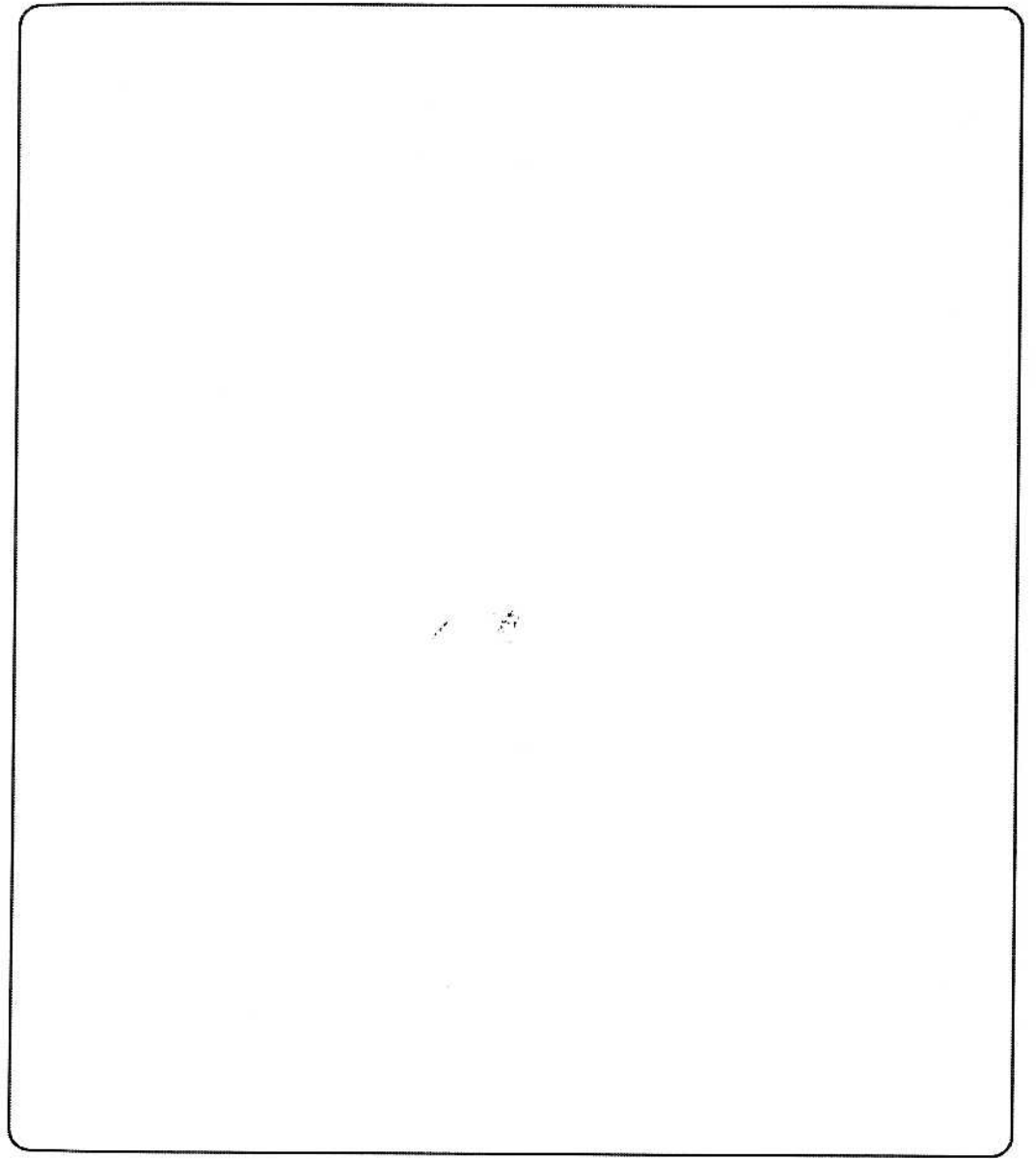
구 분	찬 성 론	반 대 론
병역자원에 미치는 영향	○매년 600여명 전후로 현역 입영자의 0.2%에 불과하는 극소수이며 이들은 전력에 보탬이 되지않는 자원임	○징병 가용자원의 감소와 장기수급전망을 고려, 병력 감축과 기존의 대체 복무제도도 축소조정하고 있으며, 병역회피 목적의 종교 선택,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 확산으로 징병제의 근간 훼손 우려
양심의 진정성 판단여부 문제	○권위있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유서와 이력서, 신원보증서,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정하면 가능함	○양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종교인이 아닌 기타 종교인이나 무신론 반전평화 주창자, 일반인 등에 대한 양심판단을 객관적 기준으로 심의판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위원회의 판정 불복시 양심판정의 진위증명이 곤란함 - 판정불복 소송 증가 → 장기대기자 발생 → 자원수급 차질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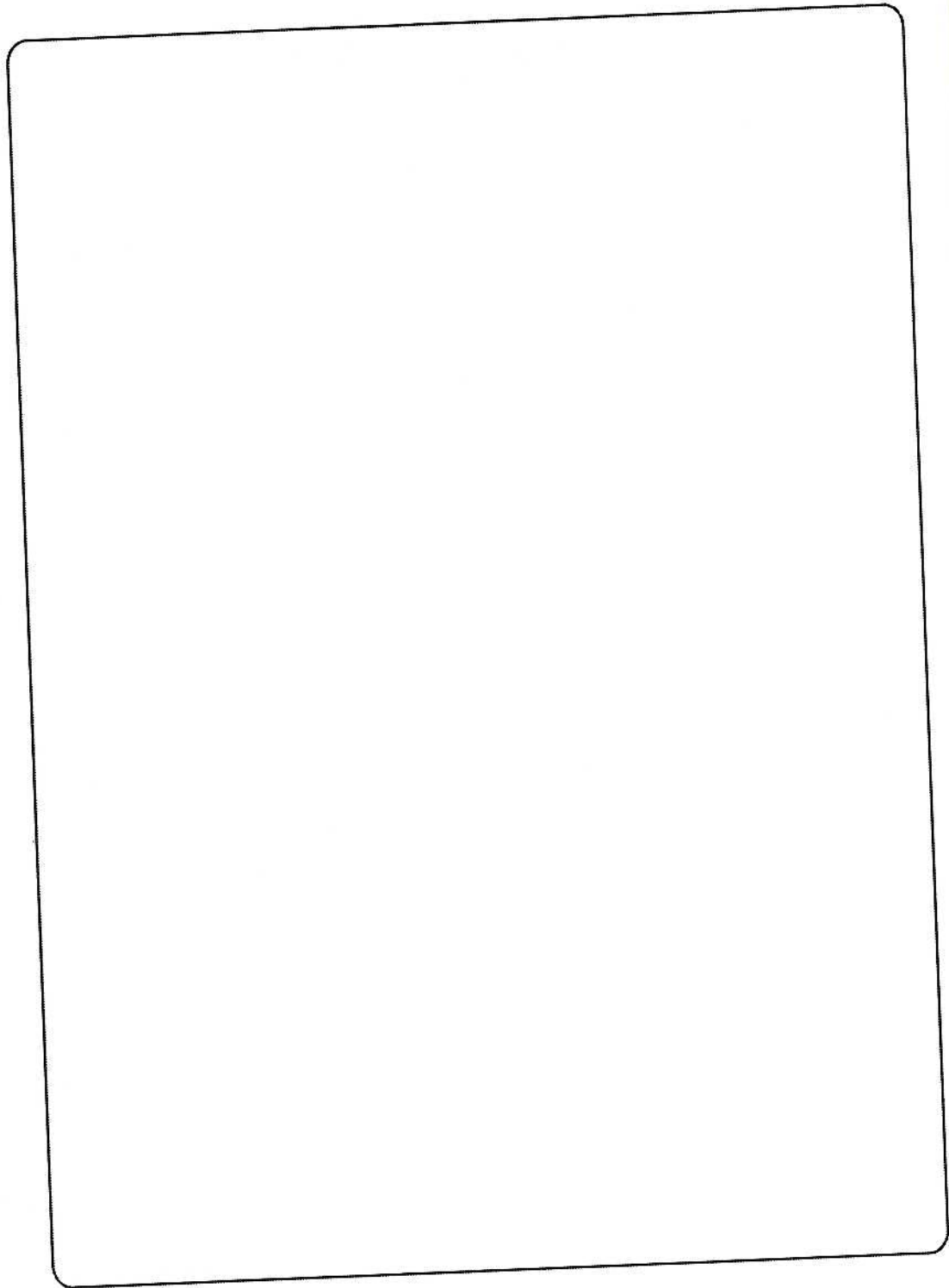
청문 및 진술

- 진술인 : 전원규 (병무청 선병국장) 43
- 진술인 :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45
- 진술인 : 최 운 (국방부 인사국장) 47
- 진술인 :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49
- 진술인 :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51
- 진술인 : 임태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활동가) 53
- 진술인 :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55
- 진술인 : 이재승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57
- 진술인 :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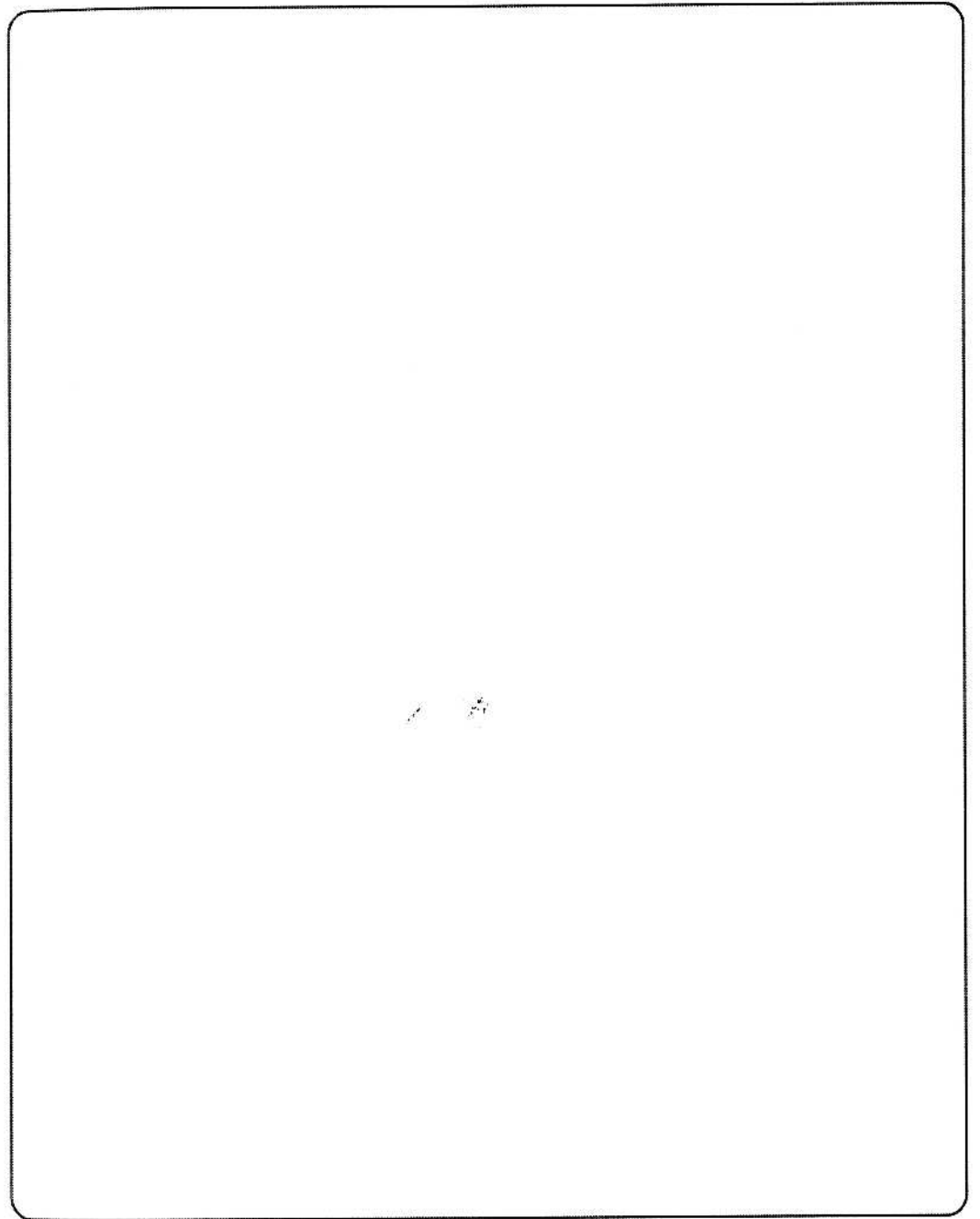
청문 및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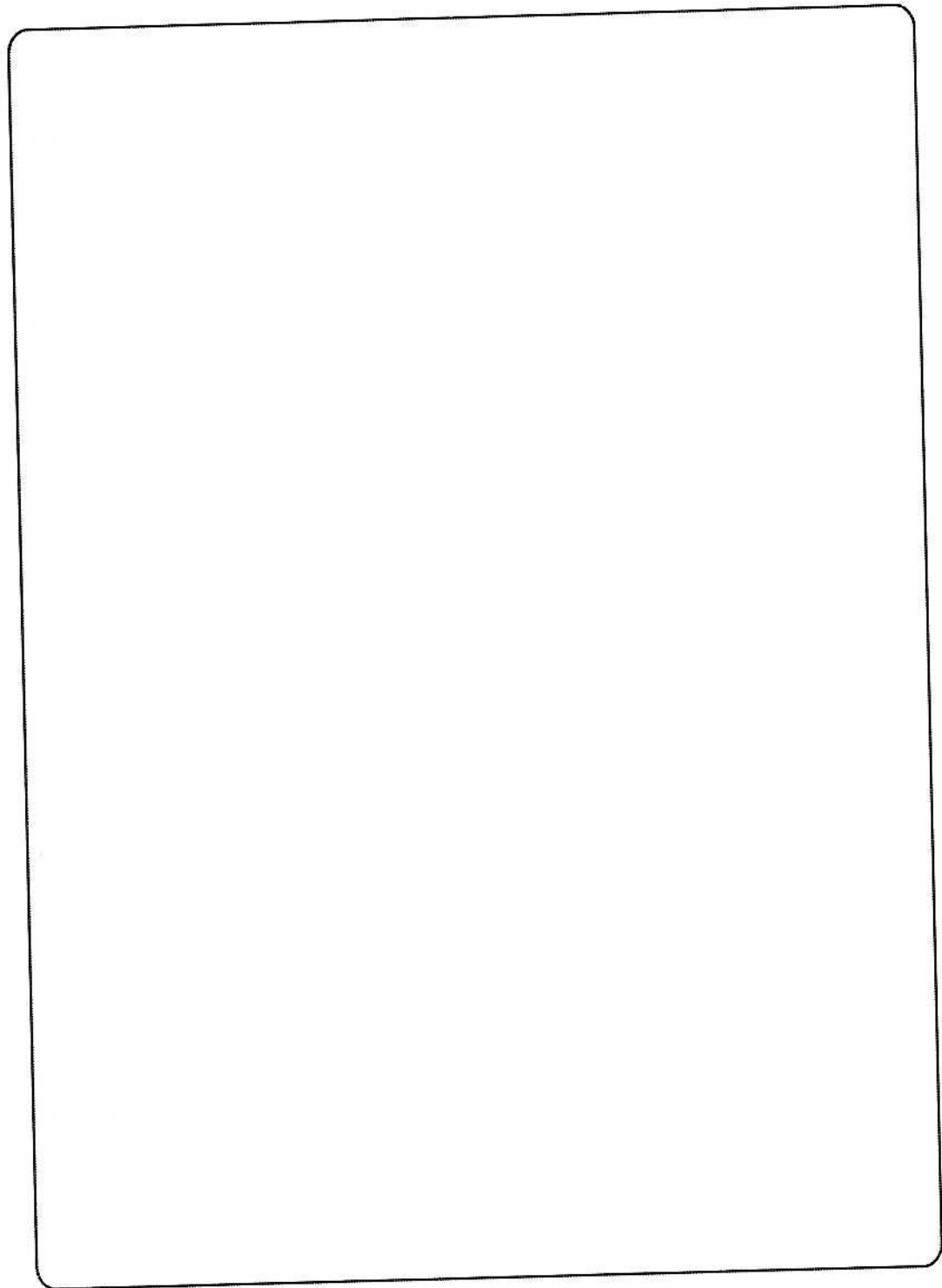
○ 진술인 : 전원규 (병무청 선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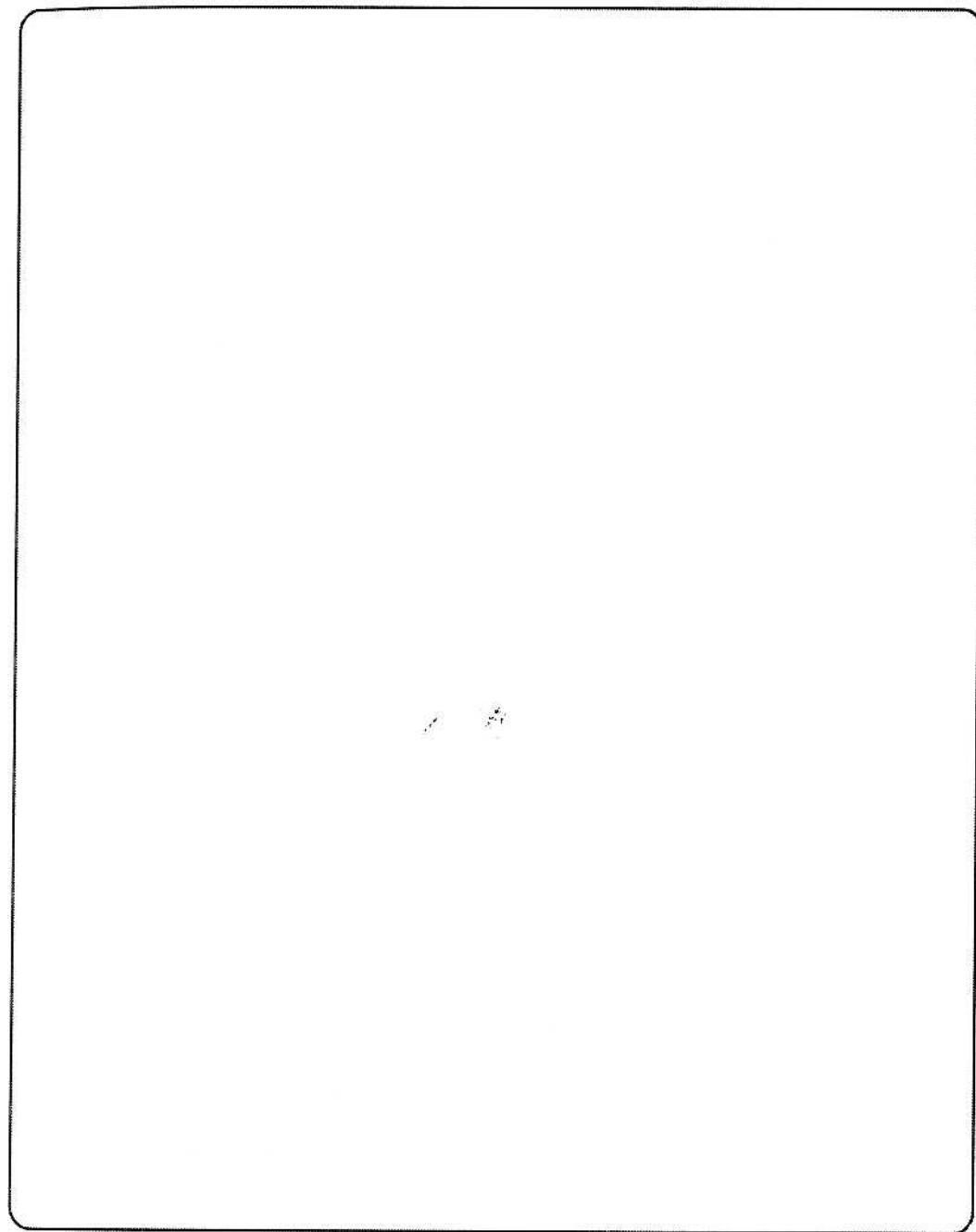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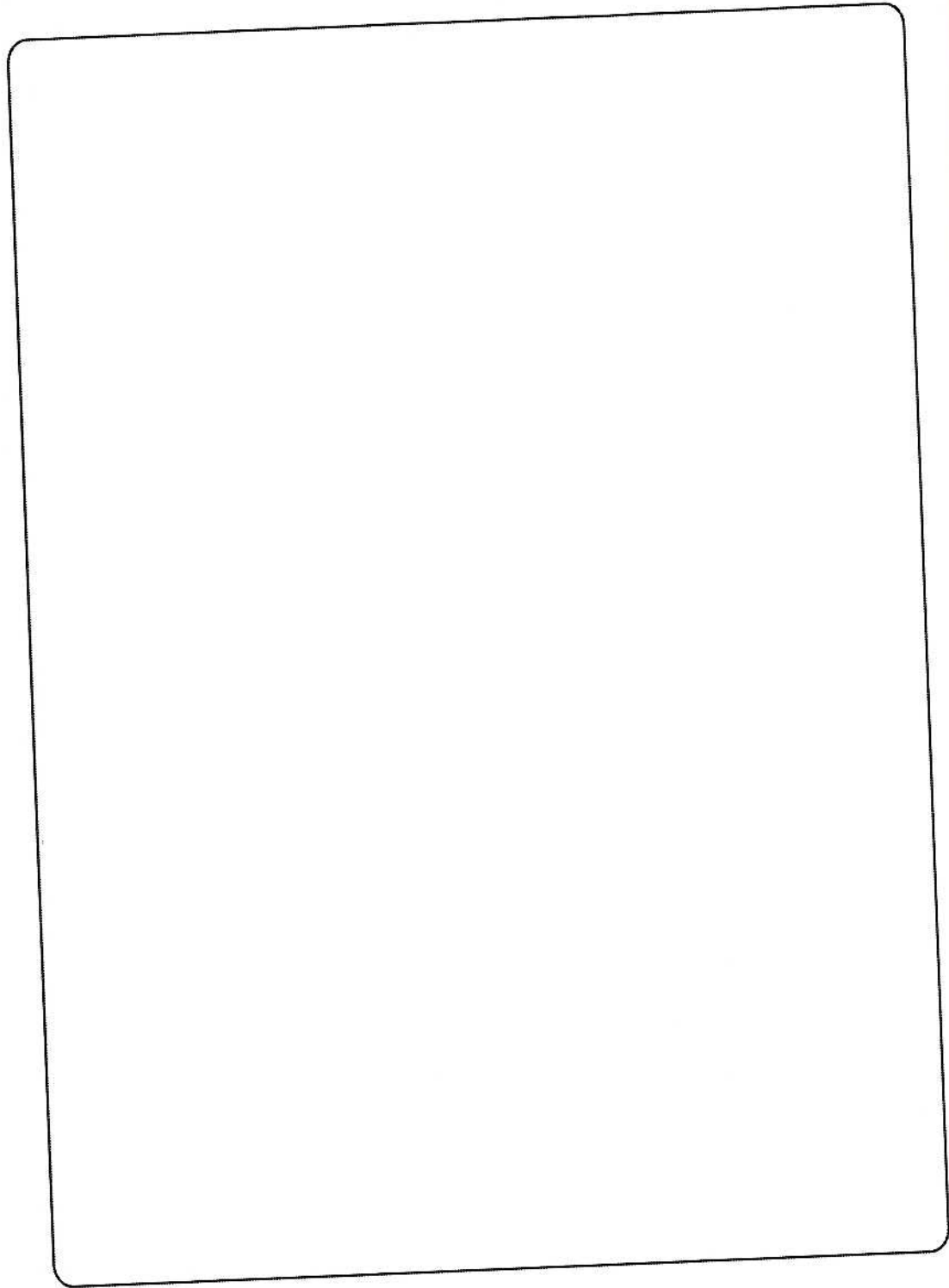
○ 진술인 :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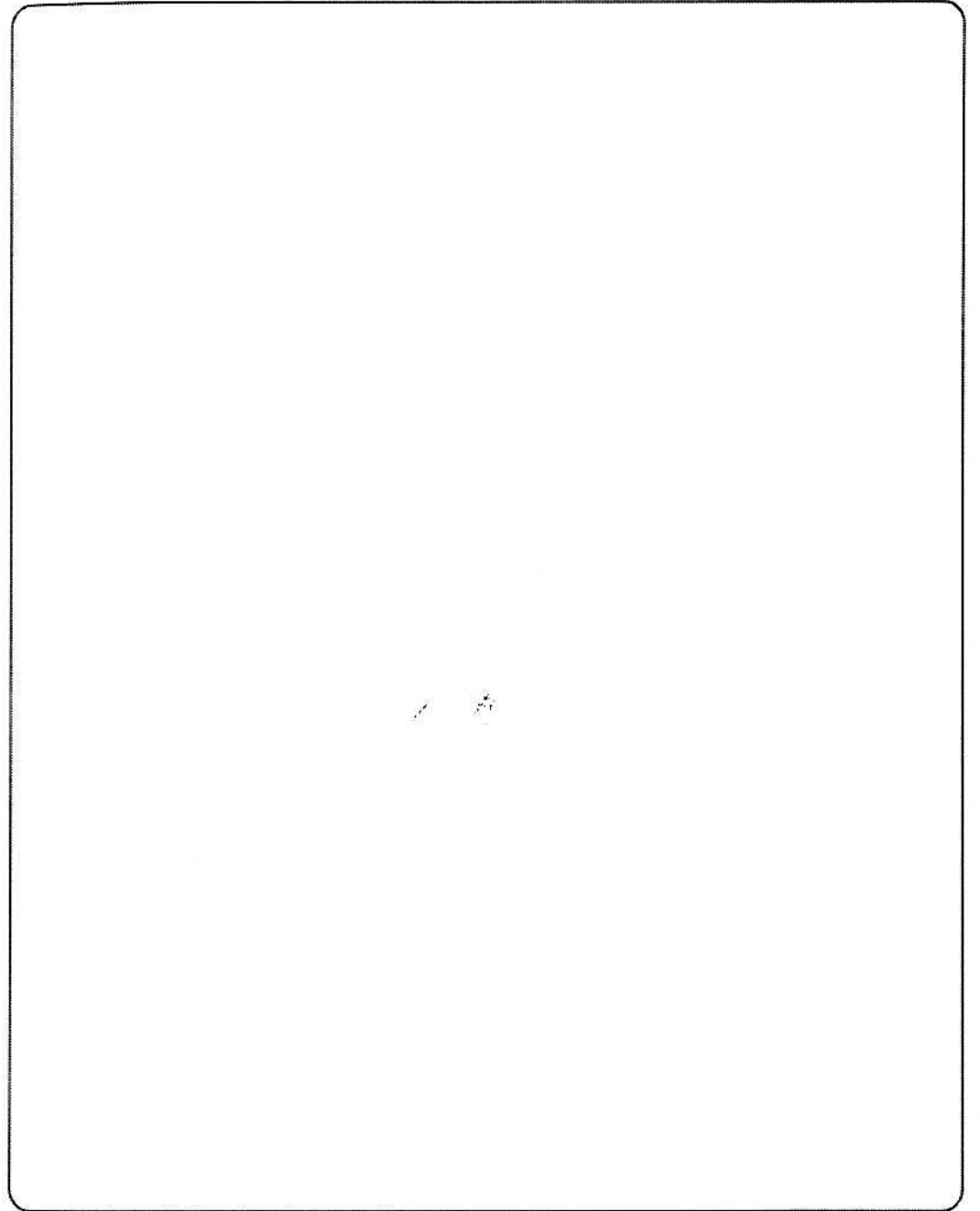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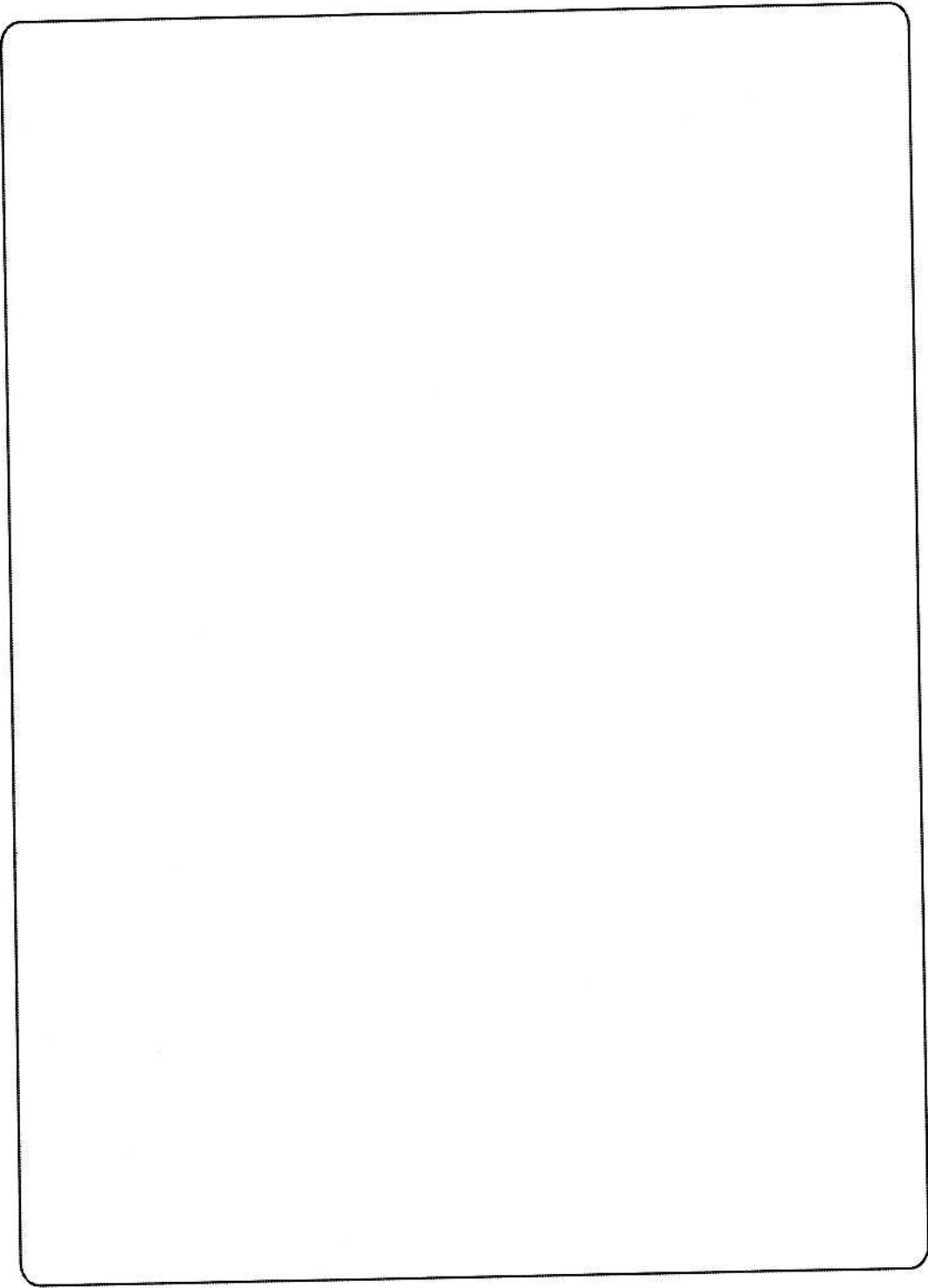
○ 진술인 : 최 운 (국방부 인사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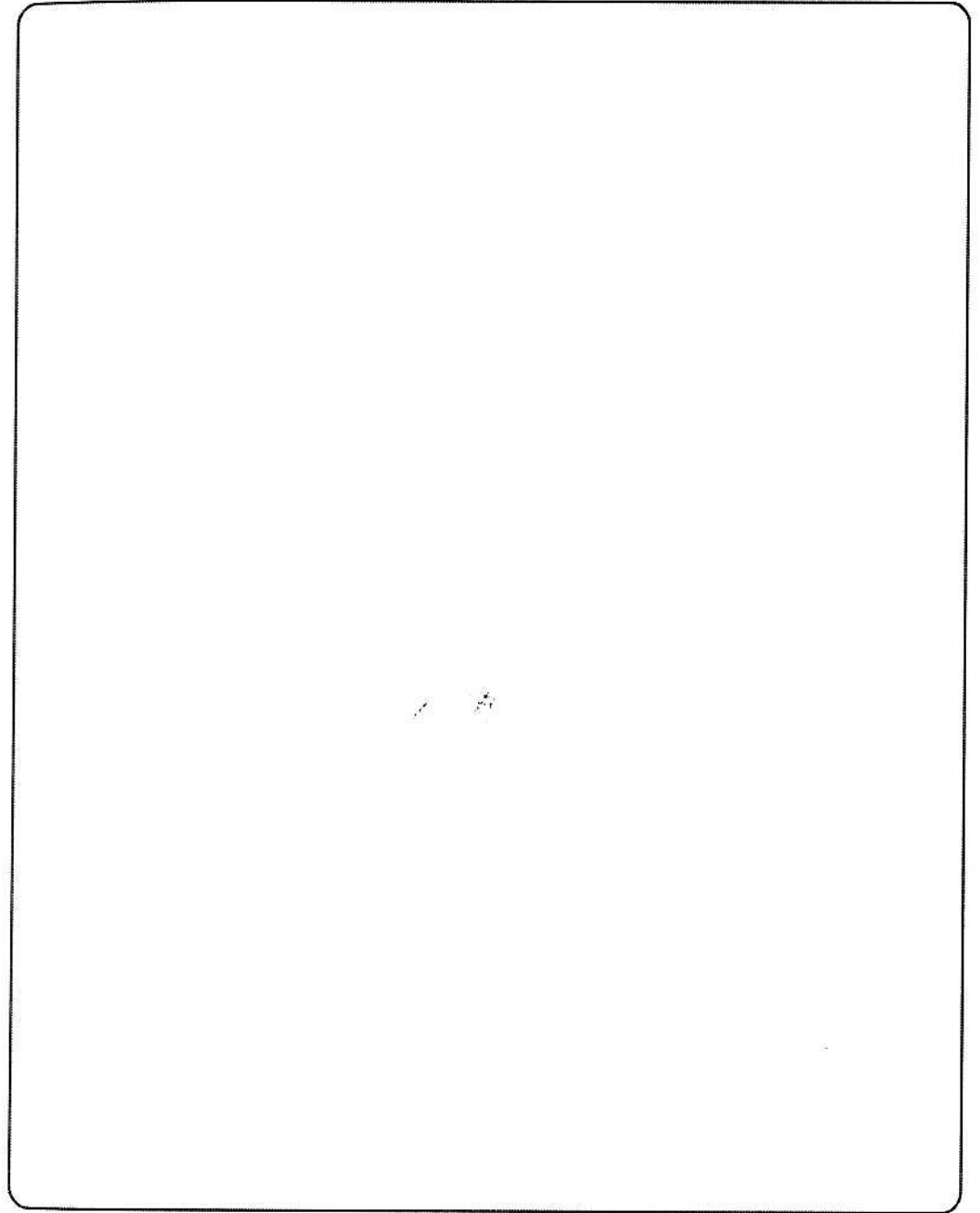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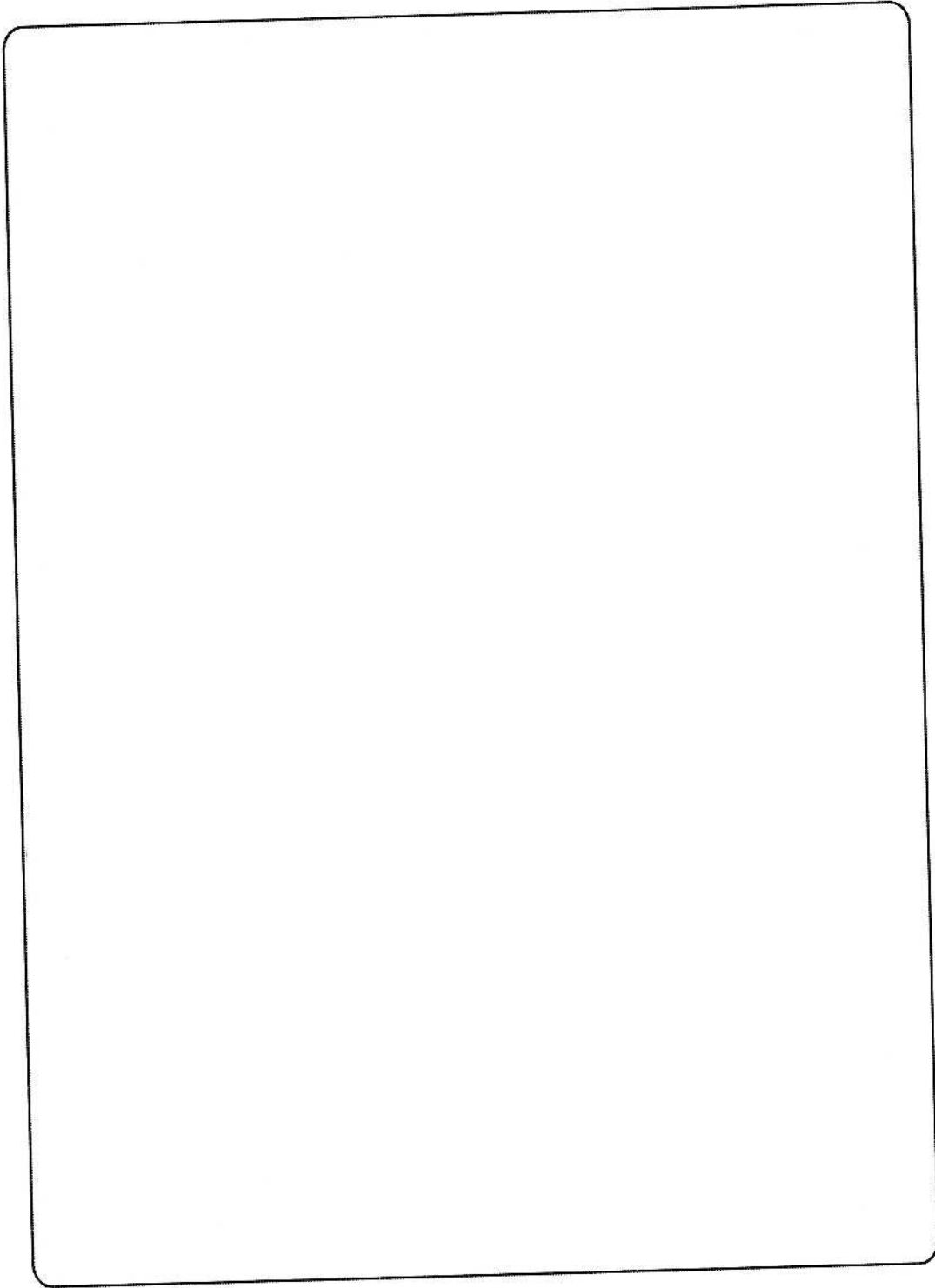
○ 진술인 :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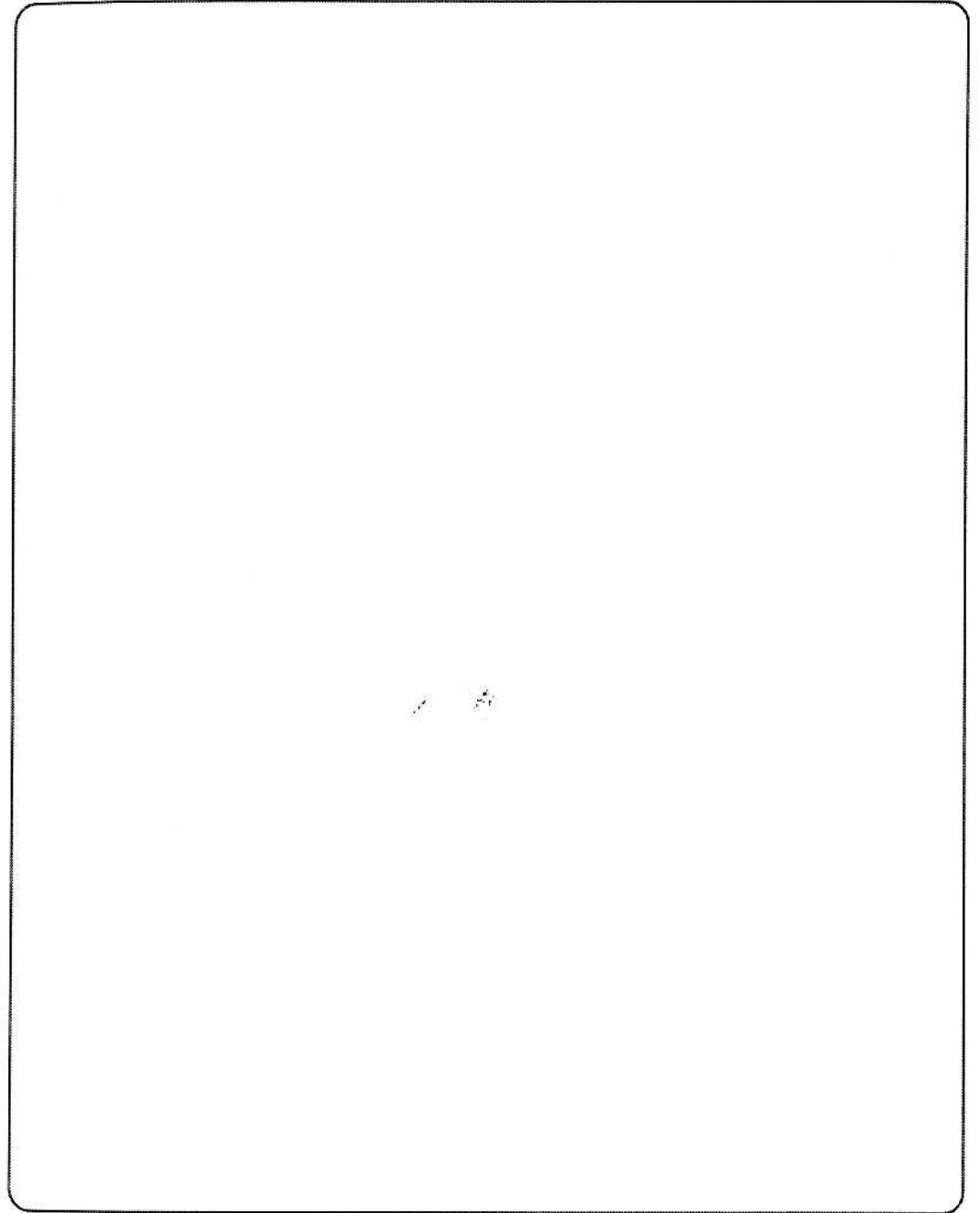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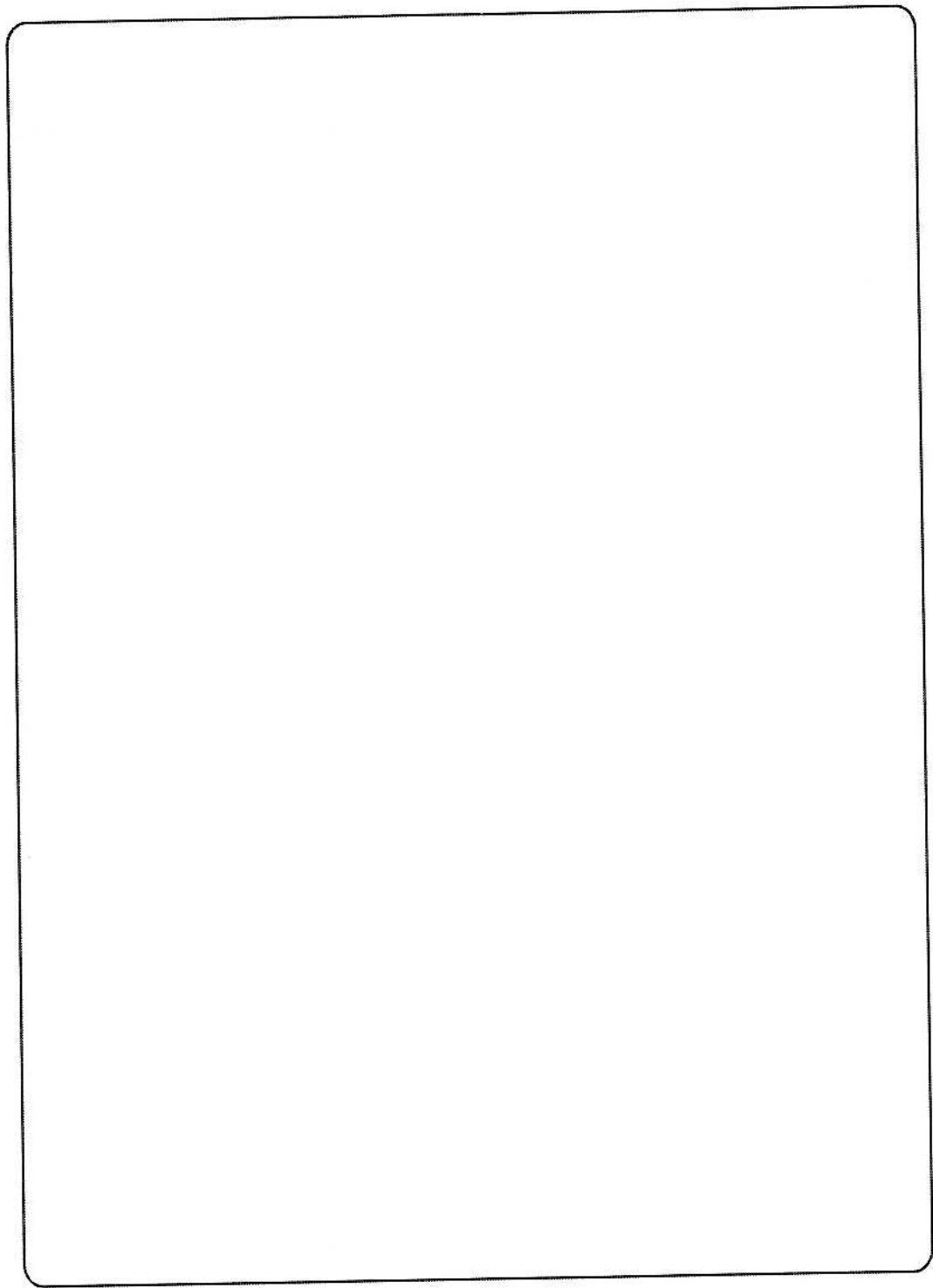
○ 진술인 :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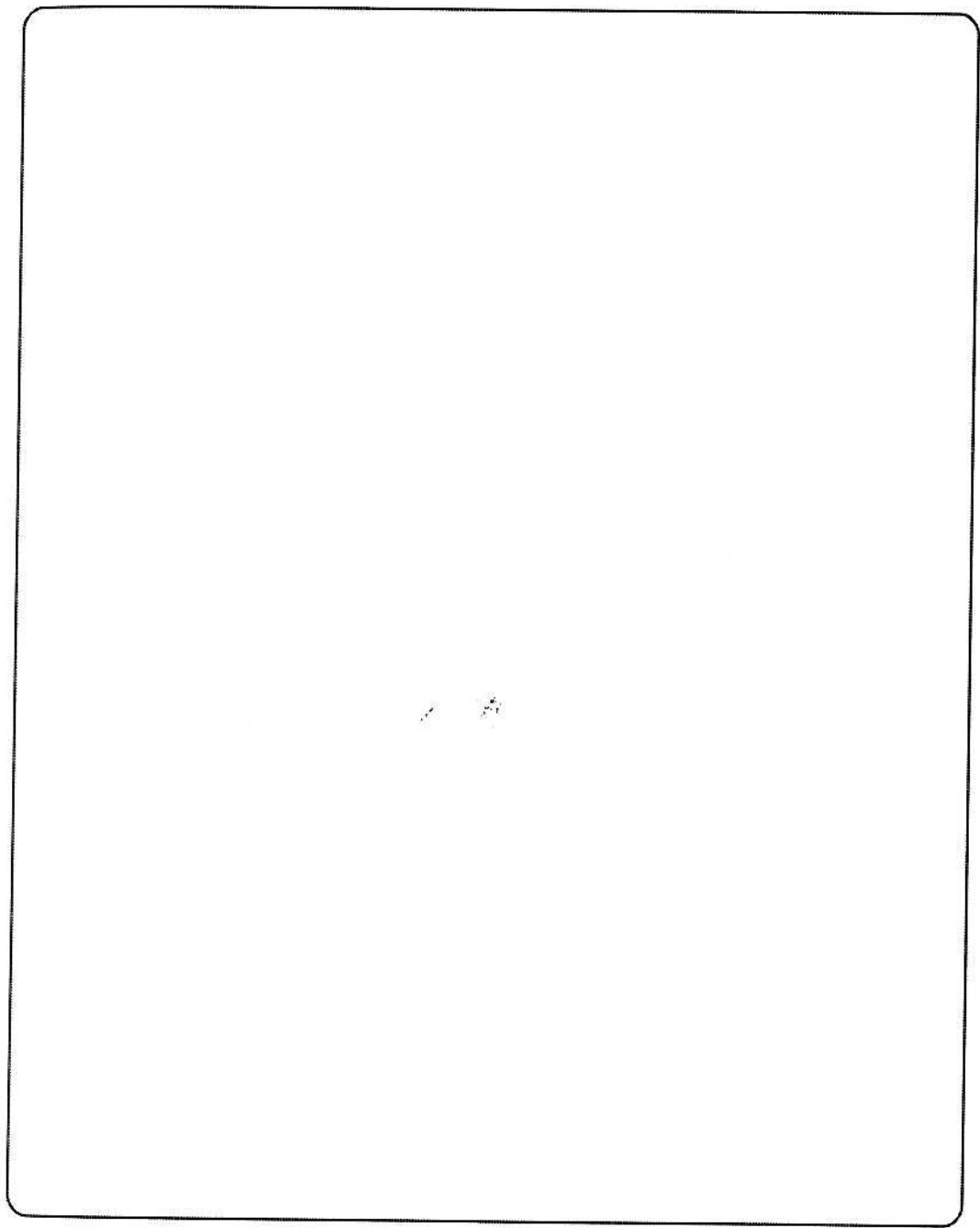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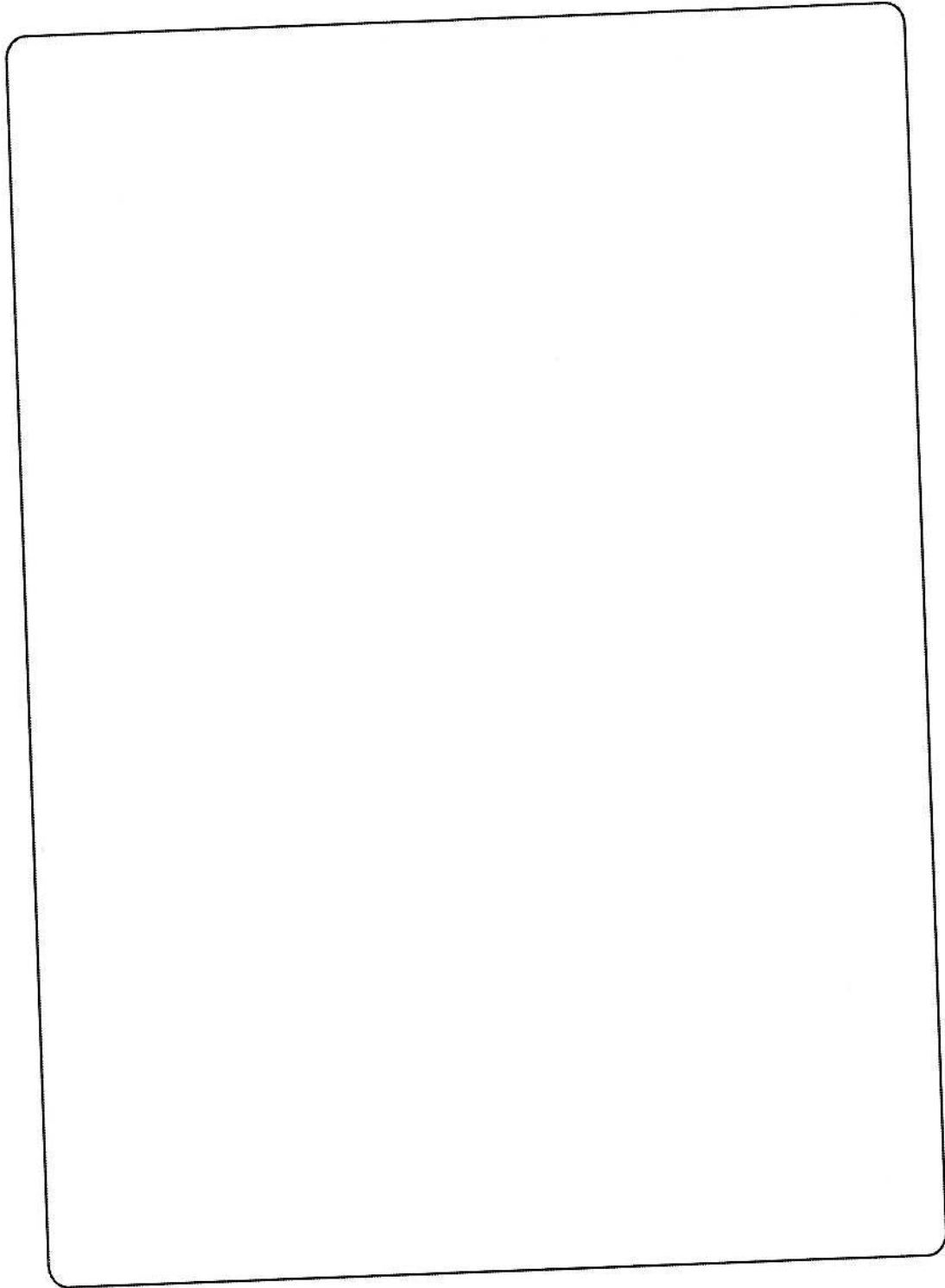
○ 진술인 : 임태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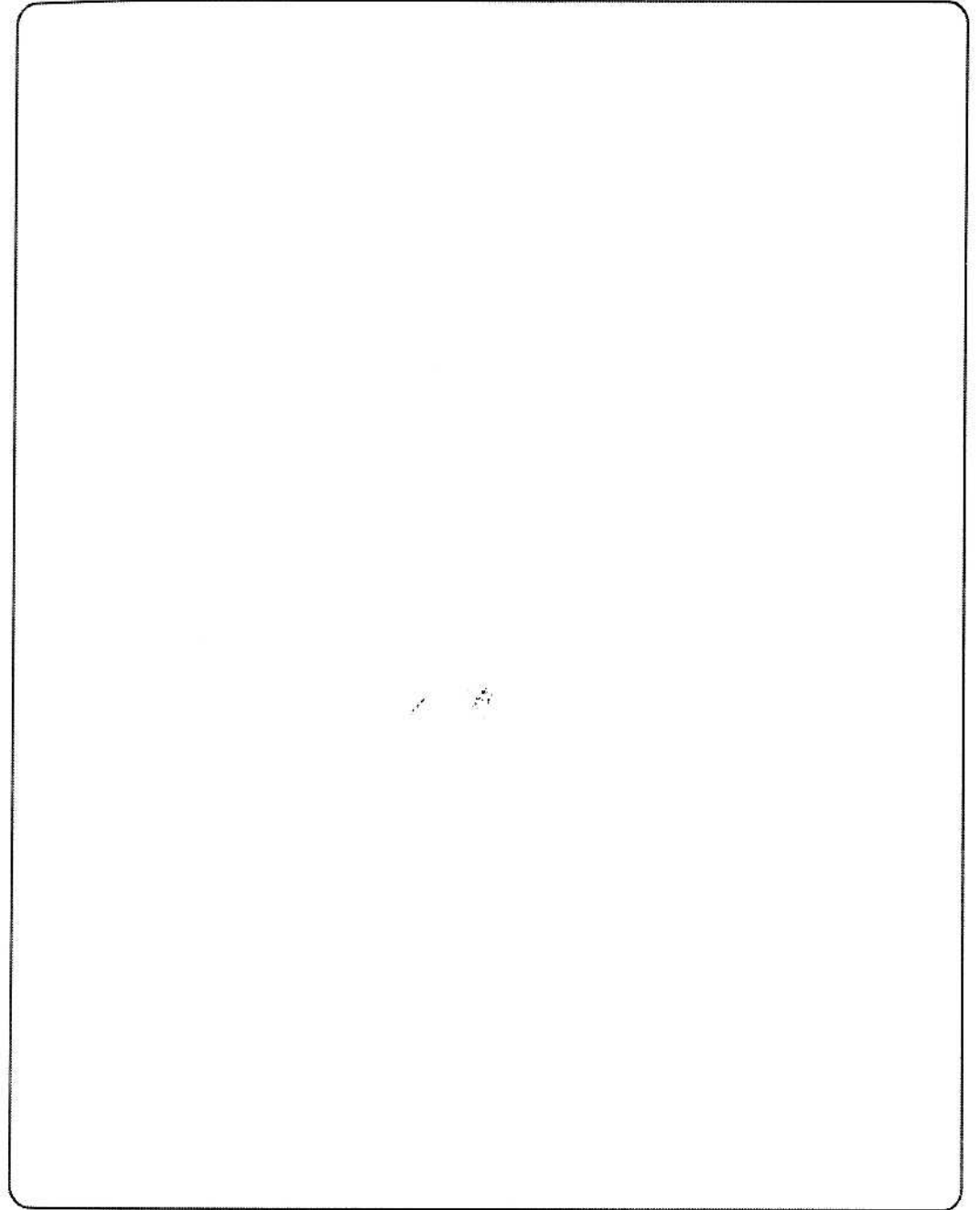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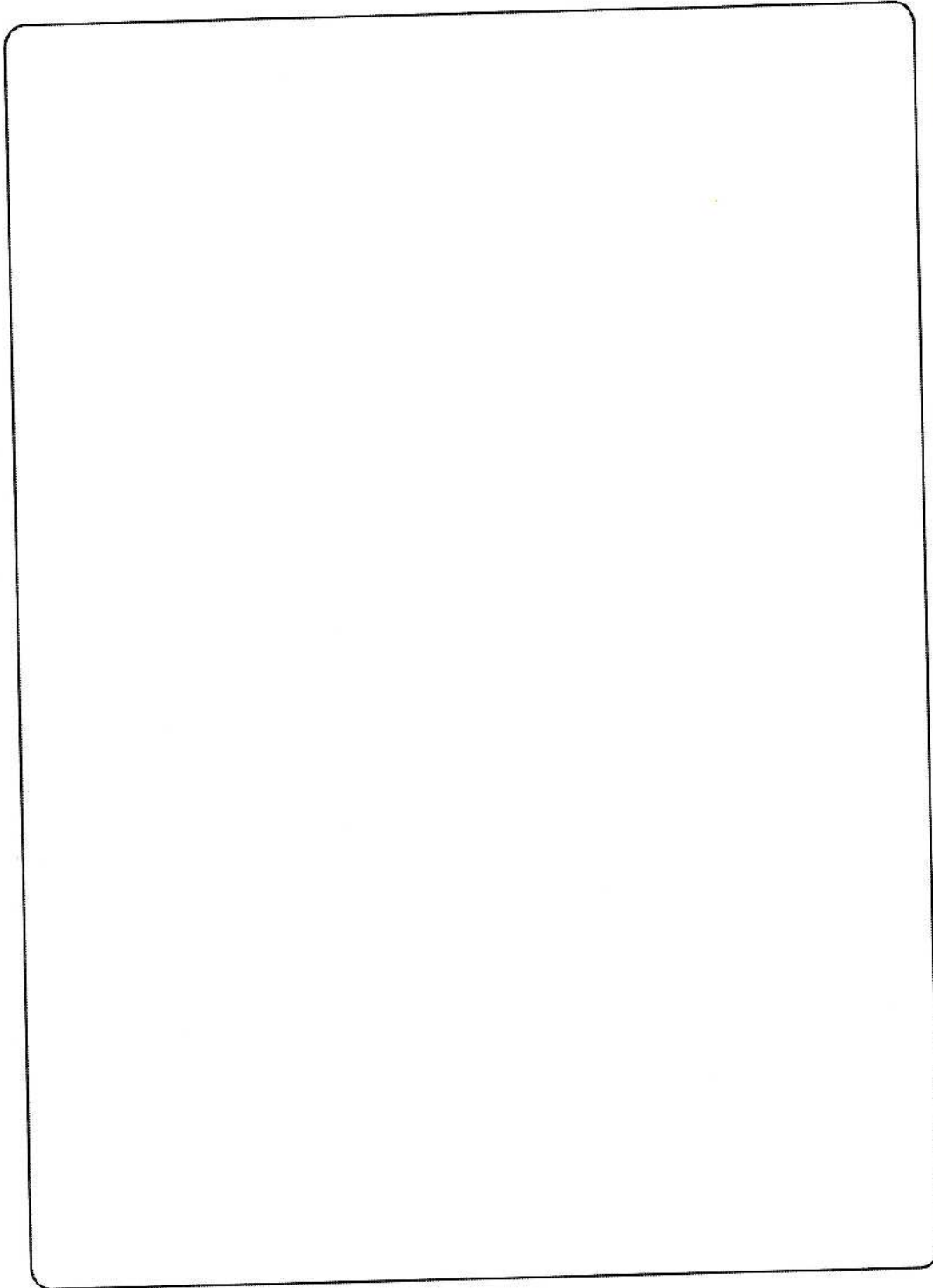
○ 진술인 :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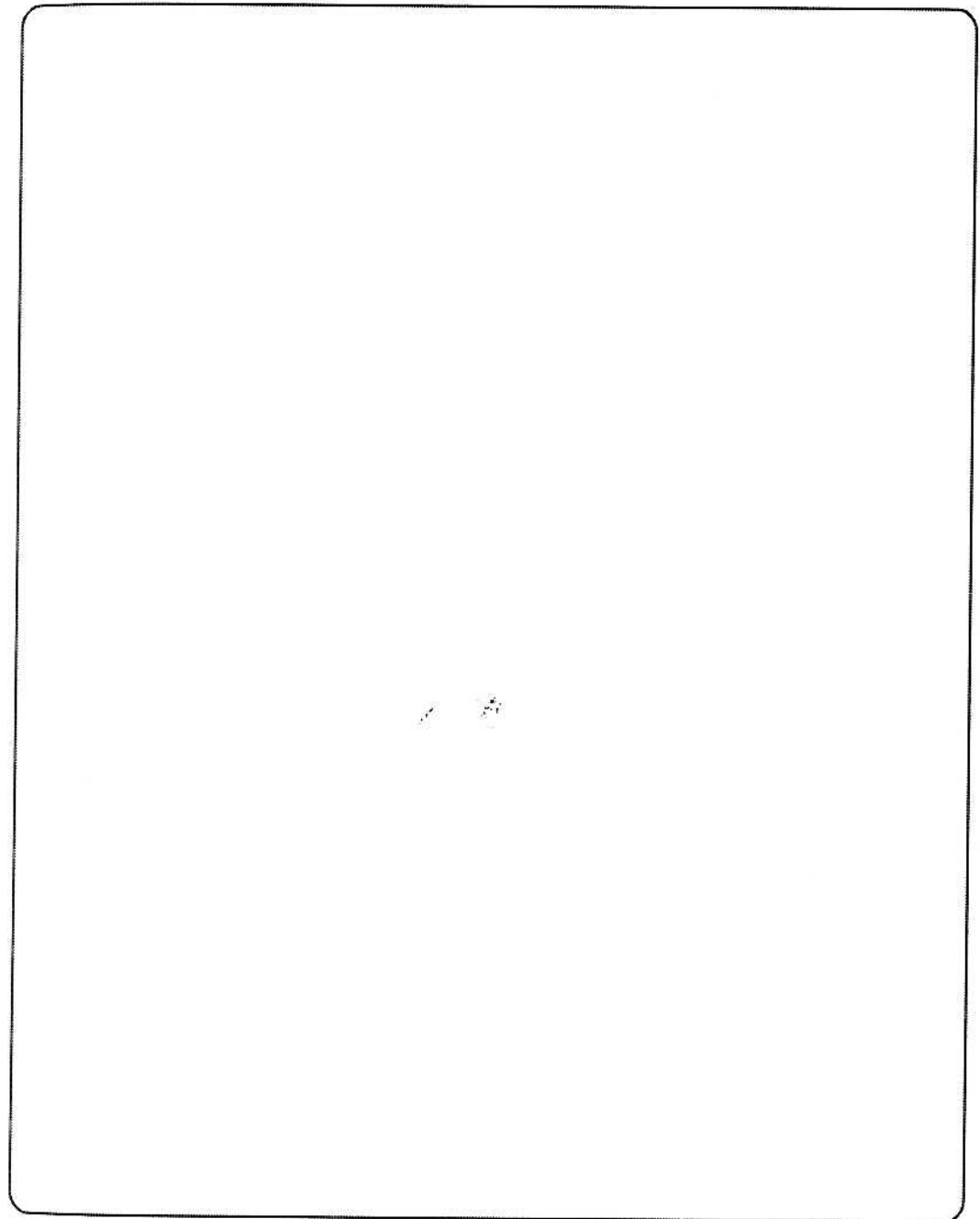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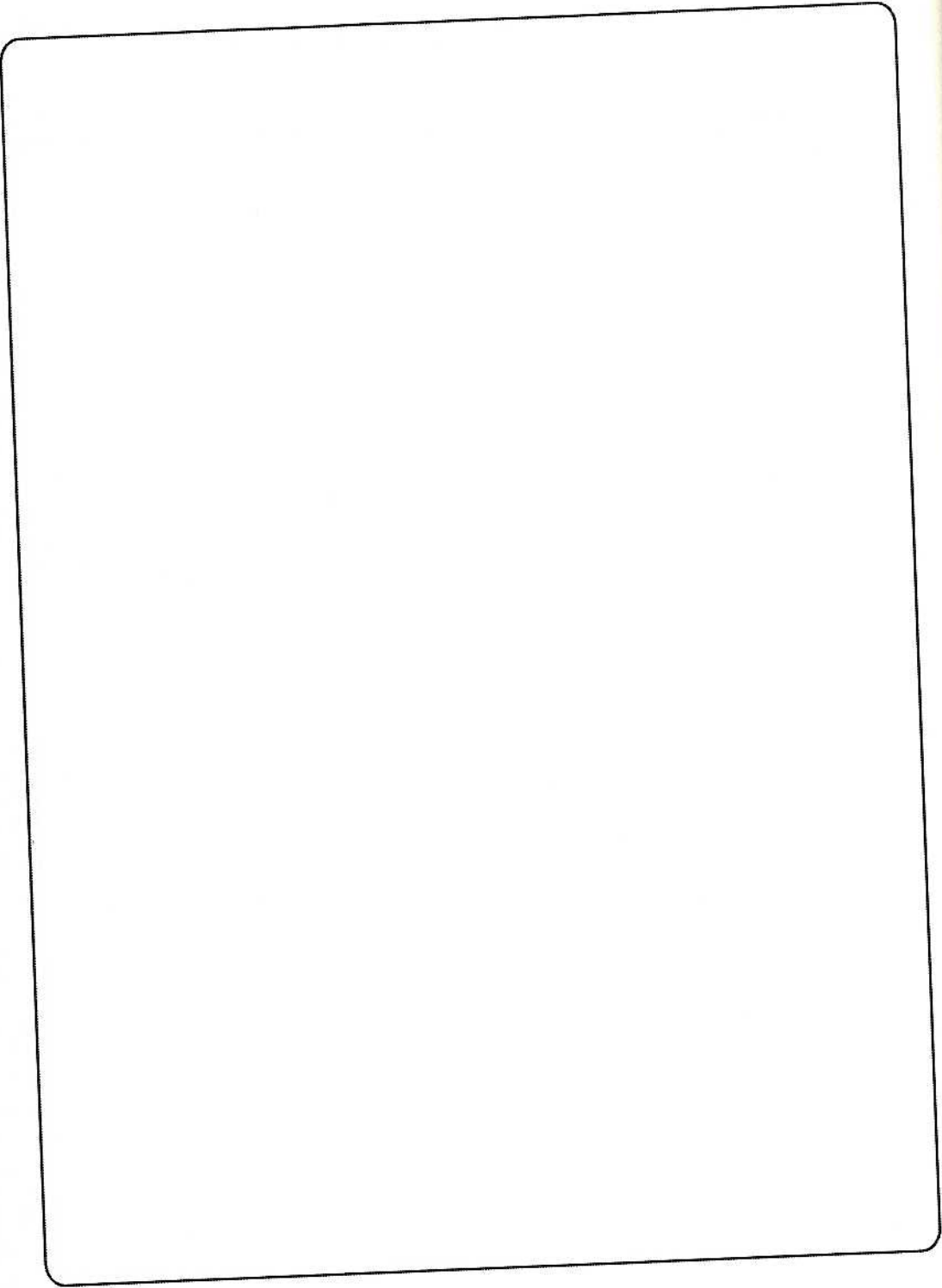
○ 진술인 : 이재승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진술인 :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별첨 1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률안

-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 63
-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99

【兵役法中改正法律案】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2
----------	-----

발의연월일 : 2004. 9. 22.

발 의 자 : 임종인 · 김덕규 · 김성곤
김영춘 · 김재홍 · 김현미
김형주 · 문병호 · 심재덕
유선호 · 유시민 · 이광철
이상락 · 이원영 · 장경수
장향숙 · 정봉주 · 배일도
김홍일 · 손봉숙 · 이정일
신국환 의원(22인)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징총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병역기피 등의 죄로 처벌받고 있어 이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더라도 이들의 사상 또는 신념을 고려한다면 전투상황에서 실제 임무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보다는 양심적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여 이들에게 징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병역대체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빙자하거나 허위로 가장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신청을 하거나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형벌을 과함과 동시에 징병검사 때

처분 받은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양심적병역거부 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징집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 나.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둠(안 제43조의3 신설).
- 다.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 라.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지원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 마.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징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시근로소집의 의무만을 지도록 함(안 제43조의10 신설).
- 바. 사회복지요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아래 단체숙박생활을 하도록 함(안 제43조의11 신설).
- 사.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를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13 신설).
- 아.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된 때 또

는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등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도록 함(안 제43조의14 신설).

- 자.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빙자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된 때 등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공익분야”를 “공익·사회복지분야”로 하고, 동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사회복지요원”이라 함은 제43조의9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사회복지요원”으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사회복지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43조중 “및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4절(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및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제43조의2(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징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양심적병역거부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 ①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지방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철학·종교학·심리학·사회학 또는 정치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종교계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위원회의 심사) ①지방위원회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지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120일”은 “90일”로 본다.

제43조의5(사실조사 등) ①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할 수 있다.

제43조의6(사회복지요원의 편입)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한다. 이 경우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43조의7(사회복지요원의 업무)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지원한다.

제43조의8(사회복지요원의 배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해의 사회복지요원의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복무시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요원의 적성·전공·자격 및 소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복무분야와 복무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의9(사회복지요원의 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한

복무분야를 정하여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0(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사회복지요원은 육군 현역병의 1.5배를 복무하여야 하며, 복무를 마친 때에는 그 소집을 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②사회복지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43조의11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사회복지요원이 제43조의14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때에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복무기간 3월 마다 1월을 감축한다.

⑤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경고처분하고,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 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⑥사회복지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때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1(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등) ①사회복지요원은 그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사회복지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